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5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 발 간 사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적·중립적 제도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옴부즈만이 수행한 주요 활동과 처리결과, 제도개선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운영상황보고서입니다.

올해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시정 권고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구조적 민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여,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예방적 행정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2025년에 접수·처리된 고충민원의 현황과 유형 분석, 주요 처리 사례, 권고 및 의견표명 결과, 그리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께 행정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넓히기 위한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행정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시민 여러분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목 차

CONTENTS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09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11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13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5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9
2. 시민옴부즈만 활동	32
3. 시민옴부즈만 홍보	40
III. 주요 처리사례	
1. 시정권고	47
2. 의견표명	63
3. 각하	66
4. 기각	79
5. 종결	95
IV. 부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111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17

I .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대표자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으로,
-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프랑스·영국·호주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자주적 해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수시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17년 8월부터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8. 01. 제1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2. 12.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8. 01. 제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0. 02. 25.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2. 26.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8. 1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021. 08. 10.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1. 09. 15. 제3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2. 02. 15.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3. 02. 15.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4. 06. 17. 제4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5. 02. 18. 2024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신분 : 2명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활동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나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민원처리 예외 대상(시행규칙 제7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일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p>제4기</p> <p>2024.6.17. ~ 2026.6.16.</p>	 	<p>윤혜옥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p>임채성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경제해양수산물국장
<p>제3기</p> <p>2021.9.15. ~ 2023.9.14.</p>	 	<p>김기채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p>김양곤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역사문화)
<p>제2기</p> <p>2019.8.1. ~ 2021.7.31.</p>	 	<p>임채성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시 경제해양수산물국장 <p>장애신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교육지원청 교육장(여수, 곡성)
<p>제1기</p> <p>2017.8.1. ~ 2019.7.31.</p>	 	<p>최봉춘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 <p>곽종철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여수농협 지점장

시민옴부즈만의 자격(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가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나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첩** : 각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전화 등 접수
- 민원 상담 및 분류(처리기한 60일 이내)



운영회의

- 조사여부 결정(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
- 담당 옴부즈만 지정



조사개시 통보

- 민원인 조사개시 통보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조사 실시

-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심의·의결

- 결과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또는 운영회의 심의·의결



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3일 이내)



결과 회신

- 옴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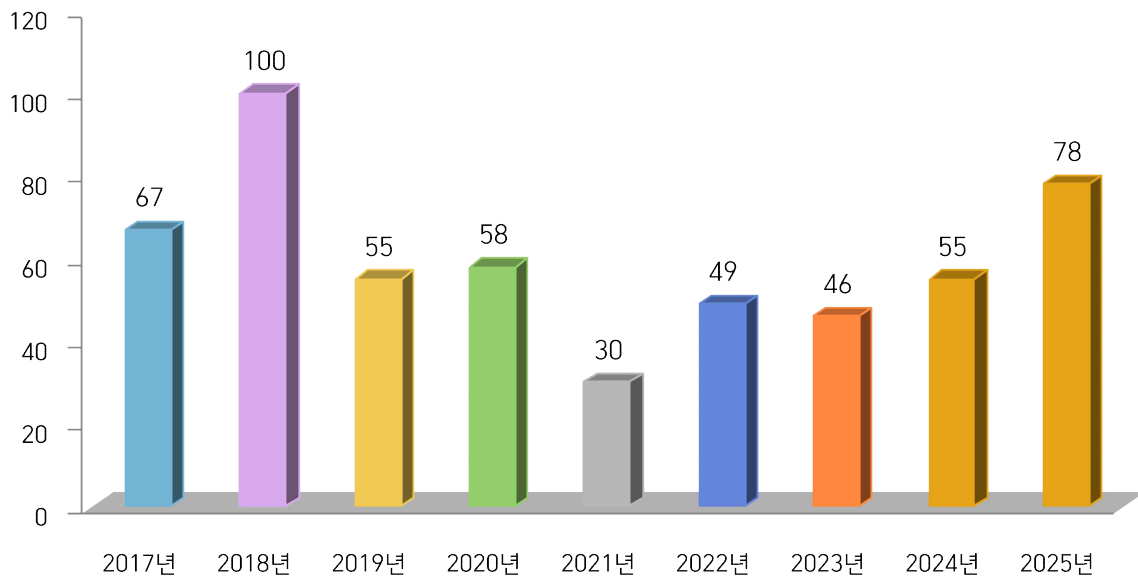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가 총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538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함.

[2017년~2025년 시민옴부즈만 연도별 처리결과 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38	67	100	55	58	30	49	46	55	78



이 중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은 161건으로 시정권고 31건, 의견표명 41건, 합의 3건, 심의안내 6건, 기각 55건, 각하 25건이며, 종결처리 민원은 377건으로 이첩 89건, 취하 14건, 상담완료 274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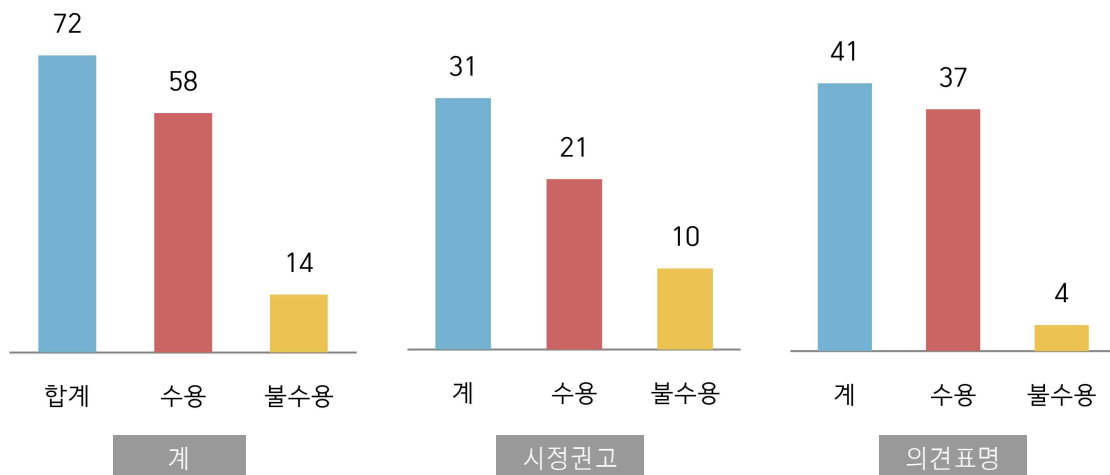
[2017년~2025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 조사(161건)							종결처리(377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538	31	41	3	6	55	25	-	89	14	274

시민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72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58건임.

[2017년~2025년 시민옴부즈만 처리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72(100%)	31	41
수용	58(81%)	21	37
불수용	14(19%)	10	4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1%로, 시정권고 민원은 31건 중 21건이 수용되어 68%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41건 중 전체 37건 수용되어 90%의 수용률을 기록함.

나 2025년 민원처리 내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25년 한 해 동안 직접조사 민원 18건과 종결처리 민원 60건을 합하여 총 78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2025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8건)						종결처리(60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78	4	1	-	4	9	-	22	3	35

*상담완료(35건): 상담 24건, 종결 11건

□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내역(18건)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리 개발행위 변경 허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 - 개발행위 변경허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 민원은 2024. 12. 18. 전라남도 감사관실로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건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완료 (각하)
2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 건의 - 신청인의 토지(○○읍 ○○리 *57-20/전/672㎡)은 1996. 11. 20.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후 장기간 사적이용권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0. 7. 1.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가 시행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으로 계속 지정된 3필지의 여수시 토지가 신청인의 토지를 비롯한 30여 필지를 세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음으로써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일몰제' 시행 5년이 지났어도 일몰제 시행 전과 거의 동일하게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완료 (개선권고)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22년)용역' 검토 결과도 △△공원의 규모축소 및 근린공원으로서의 설치기준 미달 그리고 법면, 전,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 1993. 5. 31. 근린공원으로 최초고시된 이후 약 32년이 지날 때까지 사실상 신청인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점, 여수시 소유토지(3필지)가 근린공원 설치기준 면적에 미달한 점, 인근에 다수의 도시공원이 존재하는 점,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여수시는 소유토지(3필지)에 대하여 현재의 용도에 적합하게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변경과 지목변경 등을 함으로써 신청인 등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3	김○○	<p>■ ○면 ○○로컬푸드 건물 수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용도의 ○○시식코너는 여수시에서 ○○마을 부녀회로 무상위탁 되어 있으며, - 협약서 제8조제4항은 여수시는 위탁한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 개보수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약서 제11조는 ○○마을부녀회는 시설물을 마을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24. 3. 28. 협약서를 근거로 ○○마을(대표자 : 박**)은 마을 주민 박**과 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천정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판넬이 시설된 방바닥은 우천시 높은 습도(물 침투)로 감전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임. - 여수시는 직포시식코너 관리위탁협약 제8조에 따라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보일러 대신 전기온수 보일러 등으로 교체하고, 건물 방수조치 또한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함 	완료 (의견표명)
4	장○○	<p>■ 귀어 지원사업 대출금 관련 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사유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낮은 신용도)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며, - 신용도 평가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 	완료 (각하)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보증기금)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수시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각하함</p>	
5	배○○	<p>■ ○○△△△마트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이 가능하였고 - 지상1층 일반음식점을 소매점으로 변경하고, 지상4층의 단독주택을 삭제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나 소매점(1,469.52㎡)을 소매점(672.7㎡), 일반음식점(796.82㎡)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른 행위로 판단됨.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수산물직판장 용도의 건축물 부분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의 방법으로 상점 용도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1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으로 가능하고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판매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변경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전 착공하고, 그 후 용도를 변경한 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시설군에 속하여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판매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발행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청구민원은 이유가 없어 기각함 	완료 (기각)
6	김○○	<p>■ 가해자 피해자를 바꾼 적극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임원임면 및 기관장(시설장) 임면에 관한 권한은 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므로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적의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판됨 -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여수시에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 해고에 따른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각하함 	완료 (각하)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7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통장 선출관련 결과 이의신청 - 「여수시 아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은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여수시는 아·통장협의회 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덕망과 식견을 갖춘 주민 등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가칭)이·통·반장 선정 (임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면접심사 점수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는 평가방식 도입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완료 (시정권고)
8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리 토지 지목변경 및 태양광설치 관련 문제해결요청 - 지목변경은 농지법 시행전 건축된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 수 있음.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해소한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 태양광패널 설치해 해당주민 전체 동의와 300m 이격거리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집행정지 및 개발행위허가 처분취소청구」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 차례 걸친 신속민원 등을 거친 민원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정되므로 각하함 	완료 (각하)
9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마을회관 개방요청 - 「여수시 ○○동 구 ○○부락 마을회 규약」 제3조에 마을회는 회원 간의 상부상조, 친목, 화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 마을회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서로 협의하고 상의 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함 	완료 (각하)
10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1-42번지 잔여지 관련 행정착오 및 소극행정 피해 민원 해결 요청 -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잔여지 여수시 전부 매수 의견표명’ 과 감사원(전남도 이첩)의 ‘잔여지 매수권고’ 를 받은 바 있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과 감사원의 ‘권고’ 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완료 (각하)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1	조○○	<p>■ 지방세 감면 요청</p> <p>-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거래계약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여수시는 신청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2016. 5. 9. 취득세 미납건에 대하여 수시분 부과지 및 납부 독촉을 한 사실이 있음</p> <p>-해당 부동산은 2016.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가압류 (토지)결정,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이어 2018. 4. 4. (주)○○정보통신으로 경매낙찰이 이루어 짐</p> <p>-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계약해제 입증서류 미제출,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미신청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2. 4. 매매계약에 이어 2016. 3. 16.부터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의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 경매낙찰이 (주)부경정보통신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이 상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p> <p>-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p> <p>-신청인의 경우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등기·등록 등)·실질적(잔금지급 등) 취득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또한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여수시는 신청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권고함</p>	완료 (시정권고)
12	하○○	<p>■ ○○동 ○○맨션 주차장 불법시설 조치 요청</p> <p>-신청인의 민원은 이웃과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맨션 A동 주차장에 설치된 위법불법시설' 에 대한 주장은 경계측량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후 판단 할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각하함</p>	완료 (각하)
13	손○○	<p>■ ○면 빈집철거 지원 요청</p> <p>- 신청인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면 토지가 신청인에게 이전(증여) 된 것으로 볼 때 (망모)손**가 주택을 1977년부터 소유해 왔던 것으로 인정됨</p>	완료 (시정권고) (수용)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증여) 당시 신청인의 착오로 토지만 이전된 사실이 있고, 폐주택은 (망모)손**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됨 - 보증인들(2명)의 보증으로 신청인이(망모) 손**의 사실상의 아들로 인정되는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를 통해 이전받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폐주택 또한 (망모)손**의 아들인 신청인이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되므로 여수시는 폐주택이 철거되고,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청인의 토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권고함 	
14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도로 개설관련 장기 공실에 대한 보상 신청 - 2차에 걸친 보상 협의가 되지 못한 사실이 있고, 2025년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임대수익은 다른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로 보고, 일관성 있게 공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에서 2026년도 본예산으로 12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각함 	완료 (기각)
15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의 적극 행정 요청 - 여수시 △△면 ○○○번지 월세를 살고 있는 여성이 마을 주민들의 농작물을 훼손하고, 흙치기도 하며 저녁마다 고성을 지르는 등 정신착란과 정신분열 증상을 보인다며 행정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사항 사실 확인불가 각하 처리함 	완료 (각하)
16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지원사업 기선정자 조건변경에 대한 재검토 요청 - 2025년 사업시행 공고문에 2020~2024년 선정자에게 주택소유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분양권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2025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도 사업 당시 분양권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분양권 소유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25년도 사업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주택소유확인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분양권 소유여부를 확인함으로써 2024년도 사업시행에서 발생한 ‘분양권 소유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하는 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함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7	김○○	<p>■ ○○ △△캠핑장 관련 민원 해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캠핑장에 '19. 4. 8 여수시공고로 5년간 운영자모집 제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9.28.운영 위탁서협약서(변경)에 수탁자의 거절로 문서상 통보만 이루어짐 - '21.6.3. 신청인의 캠핑장 임대요금으로 수정을 요구하였고 '21.6.8. 여수시는 위·수탁운영 2년차부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11,800㎡를 사용하기로 협약서를 변경하고 2년차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음 통보함 - '19. 4. 8. 여수시 ○○ △△캠핑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공고문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나항에 입찰자는 관계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대상재산여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시함 - 수탁자가 변경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변경협약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협약서를 기초로 3년 동안 조정면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 온 점, 이를 근거로 △△캠핑장을 계속 운영해 온 점 - 양 당사자인 수탁자와 여수시 사이에 3년 동안 협약 이행 사실이 있어 실질적 합의(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라는 '여수시 ○○ △△캠핑장 운영 위·수탁협약[변경]' 부칙 제2조의 효력의 유지된 것을 인정되므로 기각함 	완료 (기각)
18	김○○	<p>■ ○○면 ○○리 토지 지목변경 및 태양광설치 관련 문제해결 재요청(8번과 동일 반복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변경은 농지법 시행전 건축된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 수 있음.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해소한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 태양광패널 설치는 해당주민 전체 동의와 300m 이격거리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집행정지 및 개발행위허가 처분취소청구」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 차에 걸친 신속민원 등을 거친 민원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정되므로 각하함 - 따라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완료 (각하)

□ 이첩·취하 민원 내역(총25건 / 이첩 22건, 취하 3건)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	○○동 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피해 보상 요청	이첩	여수시
2	○○마을 ○○해수욕장 관광객 이용에 따른 화장실 신설 요청	이첩	여수시
3	○○도 운항도선 차도선 변경 및 공영제 운영 요청	이첩	여수시
4	○○~○○마을 간 농어촌도로 신속한 준공 요청	이첩	여수시
5	○○마을 배수로 준설 등 정비 요청 요청	이첩	여수시
6	○○마을 소형하수처리장 설치 요청	이첩	여수시
7	○○면 ○○리 농로 복원 요청	이첩	여수시
8	○○면사무소 누수 보수 요청	이첩	여수시
9	○○면 ○도 ○○피서지 화장실 보수 요청	이첩	여수시
10	○○ ○○막걸리 상품화 지원 요청	이첩	여수시
11	○○면 ○○리 폐도로 적치된 건축자재 철거 요청	이첩	여수시
12	○○면 ○○리 경사도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이첩	여수시
13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요청	이첩	여수시
14	○○아파트 버스노선 개선 요청	이첩	여수시
15	○○아파트 인근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요청	이첩	여수시
16	쌍봉도서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등 주민 안전대책 요청	이첩	여수시
17	거북선공원 관리정비 요청	이첩	여수시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8	소호동 교통체계 개선 요청	이첩	여수시
19	덕양역 인근 도로 정비 요청	이첩	여수시
20	종묘사업 자격취득 관련 지원 요청	이첩	여수시
21	묘도 조명연합수군역사공원 정비 요청	이첩	여수시
22	저소득취약계층 단체 풍수해 보험건	이첩	여수시
23	○○면 개인 사유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취하	여수시
24	○○면 ○○마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요청	취하	여수시
25	○○ △△캠핑장 위탁사용료 반환 요청	취하	여수시

□ 상담완료 민원 내역(24건)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사유지 내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 요청	관련 서류 지참하여 방문 요청
2	미등기 건물로 인한 기초수급자 배제 불만	담당 직원 안내하여 상담 해소
3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 관련 문의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안내
4	안도 주민을 위한 여객선 증설 요청	주민 의견 수렴하여 시와 해수청에 내용 전달하도록 안내
5	도서주민 농기계 수리 순회 추가 요청	섬발전지원과 주민 의견 전달
6	현지인의 귀농인에 대한 텃새 개선 요청	주민 간의 화합과 이해가 되도록 면사무소 내용 전달
7	도서 운송수단 중단에 따른 여객선 개선 요청	섬발전지원과 민원 내용 전달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8	선착장 이용 낚시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안가 청결 활동 요청	해당동 담당자에 내용 전달과 조치 요청
9	○○선착장 인근 주정차 단속 요청	주차차량과 담당자에 조치 요청
10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관련 상담	문화예술과 문의하여 안내
11	공공마을시설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법률상담 안내
12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 문의	사업신청하고 선정된 후 처리됨을 안내
13	관광객 증가로 대형버스 주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해당 동 담당자에게 조치 요청
14	농막 설치 조건 강화로 인한 어려움 호소	부서 상담하여 확인 안내
15	선착장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주민 피해 조치 요청	면사무소에 내용 전달하여 개선 요청
16	해상풍력설치 보상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요청	법률상담 안내
17	손죽도 순환버스 설치 요청	마을 이용수요가 낮아 어려움 안내
18	공유재산 용도폐지 담당부서 소극 행정 신고	담당부서 협의 후 불만족 시 고충민원 접수 안내
19	죽림지구 출장소 신속 건립 요청	현재 추진 중임을 안내
20	경로당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 지원	담당부서 안내하여 해당동 건의 요청
21	시장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 요청	담당부서 안내하여 건의
22	공원 내 강아지 장기방치로 냄새 등 주민 피해 조치 요청	공원과 안내하여 상담 해소
23	주민센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	주민센터에서 회계과로 보수 요청
24	(구)보건지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대책 요청	회계과 보수 요청 안내

□ 종결처리 민원 내역(11건)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동 주택 문제 해결요청	반복 민원 신청으로 종결 처리함
2	○○교회 옆 구거 정비요청	여수시 구거 정비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처리
3	○○○둘레길 초입 도로 정비요청	남면사무소 즉결 처리
4	철거된 지 오래된 건축물대장 멸실 요청	민원 처리 안내
5	○○둘레길 데크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협 빠른 보수 요청	노후 및 안전 문제로 철거 조치 후 관련 법령 허용 조건 완화 시 추진할 계획
6	○○읍 ○○리 지목변경 요청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 중으로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할 예정
7	○○마을 방범용 cctv설치 요청	사고 건수, 주변 여건 등 고려하여 협의 후 추진할 예정
8	○○마을 도로명주소 중복에 따른 재정비 요청	도로명 주소와 일반건축물 대장 일치함
9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 요청	신고 없이 증축한 것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 절차 안내
10	○○면 ○○리 불법건축물 양성화 요청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 처분하여 사전 통지, 이의신청, 구제 절차 및 재산상의 압류 관련 사항 안내
11	○○아파트 주변 보안등 가리는 가로수 정비 요청	나무 전정 작업 완료

2 시민옴부즈만 활동

가 2025년도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운영시기 : 2025. 3. 12. ~ 10. 30.
- 운영방법 : 읍·면·동 방문 상담
- 상 담 관 : 2명(시민옴부즈만)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고충민원 사후관리 현장 방문 등
- 운영일정

구분	읍·면·동 상담일
3월	12일(남면) 19일(안도중계소) 25일(연도중계소) 27일(화태중계소)
4월	3일(화정면) 16일(낭도중계소) 23일(여자중계소) 30일(개도중계소)
5월	14일(삼산면) 21일(초도중계소) 27일(순죽중계소)
9월	2일(소라면) 4일(돌산읍) 9일(광림동, 충무동, 서강동) 11일(쌍봉동) 16일(화양면) 17일(율촌면)
10월	14일(시전동) 21일(문수동, 여서동) 23일(묘도동), 28일(삼일동) 29일(미평동, 둔덕동, 주삼동), 30일(여천동)

□ 운영결과

총 접수건수	고충민원	현장해결	이첩	취하(종결)
51건	22건	18건	7건	4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방문 상담



홍보용 현수막



3월 12일(남면)



3월 19일(안도)



3월 25일(연도)



3월 27일(화태리)



10월 28일(삼일동)



4월 16일(낭도)



4월 23일(여자리)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방문 상담



4월 30일(개도)



5월 14일(삼산면)



5월 21일(초도)



5월 27일(손죽도)



9월 2일(소라면)



10월 28일(삼일동)



9월 9일(광림동)



9월 4일(돌산읍)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방문 상담



9월 16일(화양면)



9월 17일(을촌면)



10월 14일(시전동)



10월 21일(문수동)



10월 23일(묘도동)



10월 28일(삼일동)



10월 29일(미평동)



10월 30일(여천동)

나 시민음부즈만 활동사항

시민음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남면



안도



연도



낭도



여자도



개도



삼산면



초도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조사



손죽도



돌산읍



광림동



화양면



울촌면



묘도동



미평동



여천동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



도시계획과



하수도과



도시계획과, 공원과, 산림과



섬발전지원과



도로과



회계과



교통과, 주차차량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참석(6.26.)



제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포럼 참석(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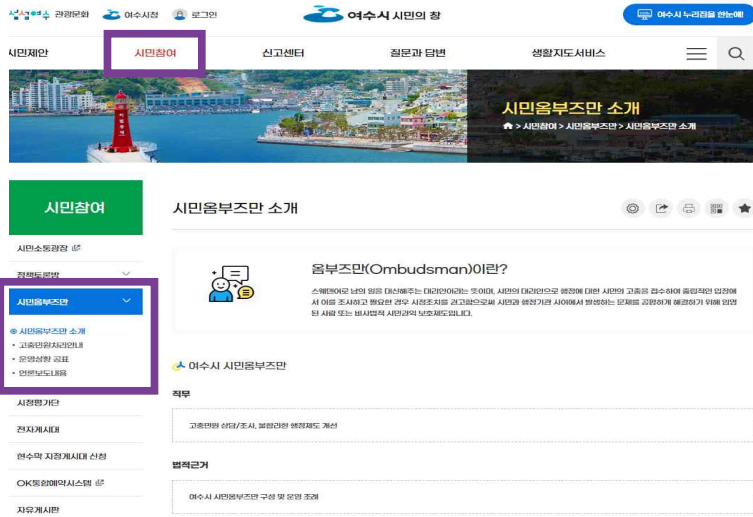


타지자체 방문



3 시민옴부즈만 홍보

가 여수시 누리집 및 리플릿 홍보



나 유튜브 동영상 제작 · 홍보



다 언론보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024년 운영 상황 공표

55건 조사·처리...2023년 대비 운영 실적 20%↑

2025년 02월 19일(수) 13:36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의 일환으로 중앙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이 '2024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표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8건, 종결 37건을 처리했다. 전년도(46건) 대비 약 20% 상승했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실제로 25건을 접수하며 전년도(7건)에 비해 높은 실적을 보였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총 46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144건을 직접 조사했으며, 이 중 시정 권고 20건과 의견 표명 36건을 여수시에서 수용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채성 시민옴부즈만은 "올해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도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의 고충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같은 눈높이로 공감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수록된 주요 처리 사례는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시민의창-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수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사입력:2025-03-11 13:47:42



2024년도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진(화양면)

[로이슈 우유정 기자]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도서 지역인 남면, 삼산면, 화정면까지 포함해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OME > 자치/행정

여수시, 섬까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큰 호응'

✎ 박난실 기자 | ⓒ 승인 2025.06.02 14:03

시민 고충 현장 해결에 '한 걸음 더'

여수시, 섬 주민들에게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리적 여건으로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3개 섬에서 진행됐으며, 주민들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총 29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12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됐으며, 17건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옴부즈만은 민원 처리 지연, 행정 불편 사항,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등 다양한 시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채성 여수시 옴부즈만 대표위원은 “섬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지속 확대해 읍면동 순회 상담, 고충민원 대상 맞춤형 운영 등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박난실 기자 pls2020@naver.com

III. 주요 처리사례

- 1. 시정권고**
- 2. 의견표명**
- 3. 각하**
- 4. 기각**
- 5. 종결**

01 시정권고

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 건의

1 민원개요

- 여수시 ○○읍 ○○리 *57-20은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에서 해제되어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음
- (인접) ○○읍 ○○리 **36-3, **83, **92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지(근린공원)이므로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인근 도시계획용도인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 ○○읍 ○○리 **36(공원/1,586.8㎡)은 실제 공원이 아니므로 실제 이용 지목인 도로로 지목변경 건의
- 토지이용실태
 - 여수시 소유

지번	지목	지적(㎡)	이용상황	토지이용계획
계	3필지	6,843.4	법면, 전, 임야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6-3	공원	1,586.8	인도와 접한 법면, 일부 진출입로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근린공원
**83	잡종지	3,615.6	약 3/4 전, 1/4 임야, 도로와 접한 법면	〃
**92	도로	1,641 / 6,789.1	일부 도로, 일부 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개인 소유

지번	지적(㎡)	이용상황	토지이용계획
*57-20 등 약 30 필지	약 52천	전 및 (토지)임야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2 사실관계

-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시행 '00. 7. 1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책추진(안) '18. 8. 7
 - 계속 관리대상 도시공원실효 대책(안) 수립
 - 시 자체조성, 자동실효, 실효 후 관리방안 마련 등
- ※ 실효 후 관리방안(△△공원)
 - 용도지역 하향 및 신규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제한 강화
 - 보전녹지지역, 특화경관지역, 자연경관지구 신규지정 등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공고 '20. 7. 1
- 고충민원 접수(신청인→옴부즈만실) '25. 2. 24

※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결과<△△공원/2022년>

- 최초고시일 : 1993. 5. 31 - 면 적 : 6,843.4㎡
- 현 황
 -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면적(34,300㎡)의 약 80% 실효
 - 인근에 진모·상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위치함
 - 실효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됨
- 검토결과
 - 실효 후 근린공원 설치기준 10천㎡에 미달
 - 다수의 공원이 주변에 위치하여 시설폐지영향 미미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제38조의 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원녹지법) 제2조, 제15조, 제2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서울행정법원판례(선고2020구합78384판결/2021. 11. 25.)
-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32쪽

나. 판단 내용

-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결정된 구역을 ‘도시공원’ 으로 정의(「공원녹지법」 제2 조제3호나목) 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5조는 도시공원을 국가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으로 나누고, 생활권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은 그 규모가 10천㎡ 이상이고,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됨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3호는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 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지침」 2-4-1은 녹지가 훼손 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 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22년)’ 에 의하면 도시 계획시설결정 일몰제에 따라 △△공원 면적의 약 80%(34,300㎡ →6,843.4 ㎡)가 실효되었고, △△공원의 면적이 근린공원 설치기준인 10천㎡에 미달하고, 인근에 다수의 도시공원(동백, 청솔진모우두강남정공원 등)이 존재하는 등 시설 폐지 후 자연 녹지지역으로의 유지 제안을 의견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의 토지포함 약 30여 필지는 1993. 5. 31. 근린공원으로 최초 고시된 사실이 있고, 2020. 7. 1. 장기미집행공원에서 실효된 토지로서 현재는 자연

- 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 이 토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3필지 중 2필지(○○읍 ○○리 **36-3, **83)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근린공원이고, 1필지(○○읍 ○○리**92)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근린공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신청인의 토지(○○읍 ○○리 *57-20/전/672㎡)은 1996. 11. 20.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근린공원으로 지정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후 장기간 사적이용권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0. 7. 1.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가 시행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그러나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으로 계속 지정된 3필지의 여수시 토지가 신청인의 토지를 비롯한 30여 필지를 세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음으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 일몰제’ 시행 5년이 지났어도 일몰제 시행 전과 거의 동일하게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22년)용역’ 검토 결과도 △△공원의 규모 축소 및 근린공원으로서의 설치기준 미달 그리고 법면, 전,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4 결론

- 따라서 1993. 5. 31. 근린공원으로 최초고시된 이후 약 32년이 지날 때까지 사실상 신청인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점, 여수시 소유 토지(3필지)가 근린공원 설치기준 면적에 미달한 점, 인근에 다수의 도시공원이 존재하는 점,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이 현저히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여수시는 소유토지(3필지)에 대하여 현재의 용도에 적합하게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 변경과 지목변경 등을 함으로써 신청인 등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5 처리결과 → 불수용

◆ 소관부서 : 공원과

- 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2020. 7. 1. 자로 실효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여 공유지는 도시계획시설중 공원 로 지정되어 있음. 도시계획상 △△공원 인근으로 제1종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대상지의 용도지역 해제(변경)은 지구단위계획시복합적인 검토 후 결정할 사항임.

○○동 통장 선출관련 결과 이의신청

1 민원개요

- 통장 이력서, 표창장, 봉사실적이 많은 자라는 통장 뽑는 규칙이 있음에도 면접을 통해 통장의 재량, 정량, 정성평가의 이유를 들어 탈락
- 그럼, 상대분하고의 역량평가를 답을 주면 납득하겠음

2 사실관계

가. 사업개요

- 통장모집 개요
 - 2025년 통장모집계획('25. 1. 20.)
 - 사유 : 다양한 동민의 시·동정 참여 유도
 - 선발기준 변경
 - 서류전형 : 60%→50%
 - 면접전형 : 40%→50%
 - 적용시기 : '25. 1. 22. 실시된 통장선발 면접
 - ○○동 통장모집공고
 - 모집기간 : '25. 5. 26 ~ 6. 9
 - 모집대상 : 10개 통(7· 22· 27· 38· 49· 59· 61· 63· 64· 65통)
 - 신청자격 : 해당 통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의 주민
 - 임 기 : 2년

나. 사실관계

- 2025년 ○○동 통장 모집 계획 검토 보고 '25. 1. 20
 - 통장선발 기준을 서류 50%, 면접 50%로 변경
- ○○동 통장 모집공고(10개 통) '25. 5. 26
- 통장후보자 면접 '25. 6. 17

- 통장선발 결과 통보 ‘25. 6. 18
- 고충민원 접수(김*숙→옴부즈만실) ‘25. 7. 7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단 내용

- 「여수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은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임명 자격을 해당 리·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4조는 이·통장의 임명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선발 및 평가 기준이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동장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하기 어려움
- 다만 면접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심사할 경우 다양한 관점의 심사가 어렵고, 획일적인 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불신 또는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결 론

- 따라서 여수시는 이·통장협의회 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덕망과 식견을 갖춘 주민 등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가칭)이·통·반장 선정(임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 면접 심사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는 평가방식 도입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총무과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5. 11. 13.)
 - 이·통장 후보자 심사방식 표준안 마련
 - 서류 심사 50% + 면접 심사 50%
 - 면접위원 구성: 3~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 이·통장 후보자 심사 평가 기준표 표준안 마련
 - 서류 심사[50점] : 거주기간(15), 자원봉사실적(10), 직업상태(10), 참여기회균등(10), 행정기관상훈(5)
 - 면접 심사[50점] : 책임감및주민화합능력(15), 역할인식및지원동기(15), 시정이해도(10), 시정참여도(5), 의사표현력및면접태도(5)

지방세 감면 요청

1 민원개요

- 2016년 여수시 소재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대출 불발로 실제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럼에도 단순 계약서 제출만으로 취득세가 부과 확정되었고, 이후 지방세법상 취소 신청기한 (6개월)동안 시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
- 이에 전액 취소가 어렵더라도 일부세액감면 등 구제를 요청함

2 사실관계

가. 과세물건 및 납부상황

- - 과세물건 : 여수시 ○○동 *50-1(건물 492㎡, 토지 633㎡)
- 부과 및 납부내역

(기준일 : '25. 9. 23, 단위 : 원)

구분	건수	부과액	수납액	잔액
계	3건	39,265,890	8,200,000	31,065,890
취득세(부동산)	1건	37,448,640	8,100,000	29,348,640
재산세(건축물)	1건	1,509,780	-	-
재산세(토 지)	1건	307,470	100,000	207,470

※ 현재 30만원/분기 납부중

- 소유권 변동관계

토 지			건 축 물		
소유자	일 자	변동사유	소유자	일 자	변동사유
장**	'11. 9. 1	소유권이전			
김**	'12. 12. 13	소유권이전	김**	'15. 9. 16	소유권보존
◇ 정보통신	'18. 4. 4	소유권이전	◇ 정보통신	'18. 4. 4	소유권이전

나.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계약 통보 ‘16. 2. 4
 - 토지 및 건물(여수시 ○○동 *50-1)
 - 매도인 김** ↔ 매수인 조**
- 부동산거래계약 실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16. 2. 4
 - 잔금지급일 : ‘16. 2. 4
- 가압류 결정(토지 / 광주지법 순천지원) ‘16. 3. 16
 - 채권자 : 위**, 청구금액 : 208백만원
- 취득세 미납부건 수시분 부과고지 ‘16. 5. 9
-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법 순천지원) ‘17. 4. 21
 - 채권자 : △△새마을금고
- 소유권이전(경매낙찰) ‘18. 4. 4
 - 소유자 : (주)◇◇정보통신
- 직소민원 접수(국민신문고) ‘25. 8. 1
- 민원처리결과 안내(여수시 → 민원인) ‘25. 8. 11
 - 처리결과 : 취득세 부과취소 불가
- 고충민원 접수(민원인→옴부즈만실) ‘25. 9. 15

3 판 단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제18조, 제20조제1항, 제105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대법원판례 1988. 10. 11. 선고 87누377판결 /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 2001. 4. 27. 선고 99다11618판결 /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 상고

□ 피신청인(여수시)의 주장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지방세는 2016년 부과분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 계약 해제 관련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액 경정할 수 없음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은 취득세 부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계법령 및 판결요지

- 「지방세기본법(2016. 11. 30)」 제34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 납부 의무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음
-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소정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나. 판단내용

- 신청인은 2016. 2. 4 여수시 ○○동 *50-1(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거래계약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 여수시는 신청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2016. 5. 9. 취득세 미납 건에 대하여 수시분 부과고지 및 납부 독촉을 한 사실이 있음
- 해당 부동산은 2016.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가압류(토지만)결정,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어 2018. 4. 4. (주)◇◇정보통신으로 경매낙찰이 이루어 짐
-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계약해제 입증서류 미제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미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2. 4. 매매계약에 이어 2016. 3. 16.부터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의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 경매낙찰이(주)◇◇정보통신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이 상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지방세기본법(2016. 11. 30)」 제34조제1항제1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있고,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결론

- 신청인의 경우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등기·등록 등)·실질적(잔금 지급 등)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또한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여수시는 신청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권고함

5 처리결과 → 불수용

◆ 소관부서 : 세정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 서류 미제출로 법적 요건 미충족
- 계약 해제 관련 객관적 입증 증빙자료 부재
- 부과제척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지자체의 감액 경정 권한 법률상 소멸

○○면 빈집 철거 자원요청

1 민원개요

- 사실상 모친(손**) 소유주택이 폐가로 되어있으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참고로 토지는 손** 소유임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토지를 본인(손**) 소유로 이전

2 사실관계

가. 토지 및 건물현황

- 토 지 : 여수시 ○면 ○○리 **36
- 지 적 : 133㎡(대지)
- 연 혁

변동일자	소유자명	변동사유	비 고
'22. 8. 16	김**	소유권이전	특조법 때 이전
'22. 10. 17	김**	면적정정	423㎡→394㎡
'22. 12. 5	-	분할(본번에 -1 부합)	394㎡→133㎡
'22. 12. 26	손**	소유권 이전	특조법 때 이전

- 건 물 : ○면 ○○리 **36-1
- 구 조 : 슬레이트 벽돌구조(주택)
- 면 적 : 44.9㎡
- 연 혁

변동일자	소유자명	변동사유	비 고
'77. . .	손**	소유자등록	

나. 사실관계

- 소유권이전(증여 김*곤 → 김**) ‘22. 8. 16.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함 - 토지만
- 면적정정(김**) ‘22. 10. 17.
 - ○면 ○○리 **36 대 423㎡→394㎡
- 토지분할(김**) ‘22. 12. 5.
 - ○면 ○○리 **36 대 394㎡→133㎡
- 소유권이전(증여 김** → 손**) ‘22. 12. 26.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함 - 토지만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3 판 단

-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외삼촌 손**와 마을이장 김**이 보증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망모)손**의 아들임이 확실시 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면 ○○리 **36)가 신청인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볼 때 (망모) 손**가 주택을 1977년부터 소유해 왔던 것으로 인정됨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증여) 당시 신청인의 착오로 토지만 이전된 사실이 있고, 폐주택은 (망모)손**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됨

4 결 론

- 보증인들(2명)의 보증으로 신청인이(망모) 손**의 사실상의 아들로 인정되는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를 통해 이전받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폐주택 또한 (망모)손**의 아들인 신청인이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되므로 여수시는 폐주택이 철거되고,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청인의 토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권고함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건축과, 자원순환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이전이 되었음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된 사실이 있고, 이장 및 마을주민과 친척에게 소유권 확인 사실 서류 제출 가능함에 따라 빈집 철거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026년 빈집 철거지원 모집 공고 시(2026. 1. 예정)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완료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시 처리지원 예정.

2 의견표명

○면 ○○로컬푸드 건물 수리 요청

1 민원개요

- 건물 누수 및 바닥 습도가 높아 전기 판넬 누전이 발생됨
 - 현재 사용 불가 상태
 - ※ 지붕 방수 및 전기온수보일러로 교체 요청

2 사실관계

- 이용 및 관리실태
 - 토지현황
 - 위 치 : 여수시 ○면 ○○리(○○마을) *45-26
 - 면 적 : 263㎡
 - 지 목 : 잡종지
 - 소 유 자 : ○○ 새마을회
 - 건물현황
 - 건 물 명 : ○○시식코너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 도 : 소매점 및 단독주택
 - 사용승인 : 2018. 03. 10.
 - 소 유 자 : 여수시
- 관리실태
 - ○○마을 바닷가 쪽에 위치한 단층 슬라브 건물로 방2칸, 소매점, 주방, 창고 등으로 구성됨

- 작은 방은 사무실, 큰 방은 식사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방바닥으로 물기가 올라와 전기보일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용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으며,
- 주방 천정에는 누수 흔적이 있음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시식코너 관리위탁 협약서

나. 판단 내용

-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추진된 ○○시식코너(로컬푸드)는 2018. 3. 10 사용승인된 건물로 토지는 ○면 ○○새마을회 소유이고, 건물은 여수시 소유로 되어있음
- 여수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용도의 ○○시식코너는 여수시에서 ○○마을 부녀회로 무상 위탁 되어 있으며,
- 협약서 제8조제4항은 여수시는 위탁한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 개·보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약서 제11조는 ○○마을 부녀회는 시설물을 마을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24. 3. 28. 협약서를 근거로 ○○마을(대표자 : 박**)은 마을주민 박**과 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천장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 판넬이 시설된 방바닥은 우천시 높은 습도(물 침투)로 감전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임.

4 결 론

- 따라서 여수시는 ○○시식코너 관리위탁협약 제8조에 따라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보일러 대신 전기온수 보일러 등으로 교체하고, 건물 방수 조치 또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함.

5 처리결과 →수용**◆ 소관부서 : 섬발전지원과**

- ○○도 ○○ 시식코너(로컬푸드) 건물 수리 요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 관리 위·수탁 협약 8조에 근거하여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선은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보일러를 온수 보일러 등으로 교체하고, 건물 누수 부분도 방수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비할 예정.

3 각하

귀어 지원사업 대출금 관련 진정

1 민원개요

- 작년 귀어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일부 수협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시청 어업생산과 승인하에 선박 건조를 함.
- 중간 신용점수 관계로 귀어자금 대출이 어렵다하여 민원을 신청함

2 사실관계

가. '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용재)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귀어인 수산 분야 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지원
- 지원자격 : 만 65세 이하/ 이주 기한·거주기간·교육실적 충족
 - ※ 제외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회생 중인 자,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자 등
-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어업(어선건조 및 구입 등), 양식업 등
 - 주택구입 :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지원방식 및 형태
 - 사업(일부)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제공 100% 수협자금
 - 연 1.5%(이차보전 사업),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한도 및 범위
 - 창업자금 300백만 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75백만 원 이내
 -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나. 사업진행 상황

-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4. 7. 1
-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24. 9. 26
-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추진상황 현장 확인 (여수시) ‘25. 2. 4
 - 어선구입 및 장비 등 구매 완료 확인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여수시) ‘25. 2. 7
- 신용등급 기준 미달로 대출 불가 통지(여수수협→신청인) ‘25. 2. 19
 - 사유 : 대출 가능 신용등급 요건 미충족
 - ※ 농신보 보증서 발급 : 신용등급 8등급 이상 가능(농신보 기준)
- 신용등급 재평가 ‘25. 4. 9
 - 수협 신용등급은 상향, 농신보 신용등급은 요건 미충족
- 민원신청서 접수(신청인옴부즈만실) ‘25. 4. 14

3 판 단

-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사유가 신청인의 귀책 사유(낮은 신용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4 결 론

- 신용도 평가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수시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각하함.

○○면 ○○리 개발행위 변경 허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

1 민원개요

- 조**(○○면 ○○리 *74-31 소유자)의 최초 허가 조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고발한 여수시의 행정명령인 원상복구의 범위를 확인하여 주시고
-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도 수년간 방치한 공무원의 책임, 멀쩡한 저의 집 진입로가 사라져버린 것,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변경 허가를 않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허가를 마무리한 여수시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에 대한 검토 요청

2 사실관계

- 여수시 ○○면 ○○리 *74-31 개발행위 변경 허가 부적정 및 여수시 편파 행정 조사요청 민원 제기(신청인→전라남도)
- 고충민원신청서 접수 ‘25. 1. 21

3 판 단

- ‘○○면 ○○리 개발행위 변경허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 민원은 2024. 12. 18. 전라남도 감사관실로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건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4 결 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가해자 피해를 바꾼 적극행정

1 민원개요

- 인권침해 가해자 김△△은 법인 이사 및 시설장 유지
- 인권 고발자 김** 공익제보자 인정받았음에도 해고됨
가. 여성가족과 공무원 해당자 미조치 방치 중
나. 김** 해고에 따른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협조

2 사실관계

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관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관」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및 제32조(부설기관)

3 판단

- 인권침해 가해자 김△△ 시설장 조치 건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관」 제28조제3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제29조 및 제32조제3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임원 임면 및 기관장(시설장)임명에 관한 권한은 법인(이사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됨
- 여성가족과 전,현직 공무원 미조치 건
- 위 건은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안으로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고충민원의 각하 등)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인정됨

- 김** 해고에 따른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협조 건

: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2024 가합56936 광주지법)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고충민원의 각하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4 결론

□ 김** 해고에 따른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협조 건

-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함.

○○동 △△마을회관 개방요청

1 민원개요

- ◇◇◇매립장 보상금 사용 목적으로 마을회관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동, 여수시에서 대책 마련 요망
- 경로당 이용 시간을 고지하여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 사실관계

가. 현황

-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 토 지
 - 위 치 : 여수시 ○○동 *82-47
 - 지 목 : 대지
 - 면 적 : 337㎡
 - 소 유 자 : 여수시○○동구△△부락마을회
 - 건물현황
 - 연 면 적 : 300.75㎡
 - 1층 : 155.67㎡(노인복지시설-노인정)
 - ※ 회원 : 30명(회장 : 우**)
 - 2층 : 145.08㎡(마을회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스토프지붕
 - 주 용 도 : 노유자시설
 - 소 유 자 : 여수시○○동구△△부락마을회

나. 사실관계

- ‘○○동 △△마을회관 사용관련 현황 등 조사’ 민원 제기
(민원인 → 여수시) ‘25. 08. 12

- ‘○○동 △△마을회관 사용관련 현황 등 조사’ 민원 처리결과
통보(여수시 → 민원인) ‘25. 08. 21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신청인 → 옴부즈만실) ‘25. 08. 25
- 고충민원 관련 현장 확인 ‘25. 9. 09
- ○○동 △△마을 경로당 : 15명(어르신 12, 옴부즈만 등 3)

3 판 단

- ○○동 △△마을회관은 ‘24. 4. 4.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1층은 노인정, 2층은 마을회관을 주용도로 하고 있으며, 마을 자비용으로 신축되었음
- 「여수시 ○○동 구 △△부락 마을회 규약」 제3조에 마을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 친목, 화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 마을회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결 론

- 따라서 신청인의 ‘○○동 △△마을회관 개방요청’은 여수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

토지 지목변경 및 태양광패널 설치 사업 관련 문제해결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리 *6-4,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분할을 원치 않음
- 여수시 ○○면 ○○리 산*9-1, **2-8번지에 태양광패널 설치 관련 주민 동의서에 신청인이 도장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청에서 사업을 허가해주었음.
- 2025-30 민원 처리 결과 재통지 요청

2 사실관계

가.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여수시 훈령 제345호)
 - 주거 밀집 지역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격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주택부지경계에서 3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 조례 시행 이전 접수된 신청은 「여수시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 따름
-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알림」
전라남도(2024. 2. 14.)

나. 사실관계

- 개발행위허가 신청(△△전기(주) 김** 외 8인) 2017. 7. 12
-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시 훈령 제345호) 2017. 7. 25
 - 주거 밀집 지역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격
 - ※ 해당 주민 전체동의 시 예외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18. 11. 9.
 - 주거 밀집 지역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격
 - ※ 해당주민 전체동의 시 예외
- 행정심판 제기 및 기각(송** 외 3인) 2020. 8. 28.
 - 개발행위허가 처분 집행정지 기각
- 「집행정지 및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2020. 9. 9.
 - 송** 외 3인
- 개발행위허가 공사중지 통보 2020. 9. 9.
- 1심, 2심 판결 선고(여수시 승소) 2022. 1. ~ 6.
 - 제소기간(1년)이 경과로 부적합
- 대법원 판결(상고 기각/ 최종 여수시 승소) 2022. 10. 14
- 공사 일시중지 해제 통보 2022. 10. 18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 기각 2023. 8. 16.
- 행위허가 준공검사필증 교부 2024. 8. 2.
 - ※ 신속민원 접수(박oo) : 1차, 2차, 3차(3회)
 - ※ 신속민원 접수(김oo)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7회)

3 판 단

-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분할을 원치 않음에 관한 건
 - 여수시 ○○면 ○○리 *6-4번지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이전 (1973. 1. 1.)에 건축(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 재산세 과세내역에 주택으로 기재됨)된 주택으로 인정되며,
 -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분할 신청 할 수 있고
-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주민 동의서에 신청인이 도장 날인을 하지

- 않았으나 행정청에서 사업을 허가해주었음에 관한 건
- 2017. 7. 25. 발령된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여수시 훈령 제345호)과 2018. 11. 9. 개정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시설의 경우 주거밀집 지역의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를 이격 하되 해당 주민 전체가 동의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2017. 7. 12. 신청된 △△전기(주)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발령 및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주민 전체 동의와 300m 이격 거리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

4 결 론

-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먼저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해소한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각하함
- 본 민원은 「집행정지 및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청구」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 차에 걸친 직소 민원 등을 거친 민원으로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정되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각하함.

○○동 잔여지 관련 행정착오 및 소극행정 피해 민원 해결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가 시행한 국도17호선 대체 우회 도로(종화~둔덕) 개설공사로 발생한 잔여지 여수시 ○○동 **-** 잡종지 116㎡, **-** 잡종지 58㎡, **-** 잡종지 2,137㎡ 매수요청

2 사실관계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도17호선 대체 우회 도로(종화~둔덕)개설공사
- 사업기간 : '99. 12. 23 ~ '04. 12. 22

나. 토지현황

지번	○○동 **-**	○○동 **-**	○○동 **-**
지적	116㎡	58㎡	2,137㎡
지목	잡종지	잡종지	잡종지
소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이전 1995. 6. 16. △△건설주식회사 ○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 윤** 2001. 8. 9. 매매예약 (2001. 12. 29 접수) ○ 소유권 이전 2018. 8. 9. 윤** 2003. 12. 30. 매매예약 완결(2018. 8. 9 접수) 		
토지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7. 26. **-**에서 분할 ○ 1999. 7. 28. 분할 6,612㎡→2,311㎡ ※본번에 -** 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7. 8. 분할 2,311㎡→116㎡ ※본번에 -, - 부함 		

다. 사실관계

- 국토 대체 우회 도로공사(종화 ~둔덕) ‘99. 12. 23~‘04. 12. 22
-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 보상(시→△△건설) ‘00. 1. 5
 - 분할전 토지 **-***(잡종지/6,612㎡ 중 4,301㎡ 및 건축물)

- ‘02. 6. 10 민원토지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여수시)
 - ※ ‘00. 12. △△건설 폐업(대표 김**)
- ‘2017. 11. 가처분취소 제기(신청 윤**, 피신청 여수시)
- ‘17. 12. 22 가처분취소로 종결

- 소유권이전(△△건설(주)→윤**) ‘18. 8. 9
- 잔여지 매수관련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9. 8. 25
 - 권익위에서 ○○동 **-*** 등 3필지 전부 매수 의견표명
- 잔여지 매수관련 여수시 의견 표명 ‘19. 9. 25
 - 수용당시 동일한 소유자 아니므로 잔여지 청구권 없고, 사업기간 내 미신청
 - 일부수용 의견표명(민원인 전부 매수의견 표명)
 - 잔여지 매수기준 불부합(330㎡ 초과)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윤**→여수시) ‘21. 9. 8
 - 시멘트구거시설 철거 및 점용료 지급
 - 구거 및 수용피해로 인한 잔여지 이용불가 불인정
-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이행완료 ‘23. 6. 27
 - 배수로 철거 및 이설, 점용료 등 지급 완료
- 감사원 이첩 제보조사 결과회신(전남도→신청인) ‘24. 3. 11
 - 잔여지 매수청구 불수용에 대한 조사 관련 - 매수권고
- 잔여지 매수의무 이행신청에 대한 회신 ‘25. 6. 19
 - 매수청구기간 경과 및 당시 토지소유자와 불일치 - 매수불가
- 잔여지 매수신청 관련 시장면담(사전컨설팅 감사 요구) ‘25. 7. 3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통보(도로과→신청인) ‘25. 9. 3
 - 사전 컨설팅 감사 제외대상
- 고충민원 접수(윤**→옴부즈만실) ‘25. 9. 5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4조
- 도로법 제86조

나. 판단 내용

- 신청인이 제기한 “○○동 **-**-**번지 잔여지 관련 행정착오 및 소극 행정 피해 민원 해결요청”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잔여지 여수시 전부 매수 의견표명’ 과 감사원(전남도 이첩)의 ‘잔여지 매수 권고’ 를 받은 바 있고,

4 결 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과 감사원의 ‘권고’ 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

4 기각

○○△△△마트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1 민원개요

-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 내지 상점용도의 건축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수산물직판장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여 여수시를 속이고 당시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내는 법 침탈행위를 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나 기타 필요한 조치 요망
- ○○△△△식자재마트의 현재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수산물직판장 용도의 4,049.72㎡ 건축물 부분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방법으로 상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계획법 위반행위이므로 개축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요망

2 사실관계

가. 건축개요

- 토 지
 - 위 치 : 여수시 ○○읍 △△리 *20-6 외 11필지
 - 지적/지목 : 7,668㎡/대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 상대보호구역

□ 건축물

- 건축면적 : 1,531.87㎡(건폐율 : 19.97%)
- 연면적 : 9,387.46㎡(용적율 : 62.97%)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 지상4층/1동)
- 용도 : 판매시설(농수산물직판장), 일반음식점, 창고시설
- 건축주 : 김**

나. 사실관계

- 건축허가 신청(김**→여수시) ‘21. 3. 19
- 개발행위허가 의제협의 회신 ‘21. 5. 26
- 건축허가(여수시→김**) ‘21. 6. 22
- 건축허가(농수산물직판장) ‘21. 7. 2
-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21. 9. 30
- 개발행위허가 의제협의 회신 ‘21. 10. 5
- 건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21. 11. 11
 - 지상1층 일반음식점→소매점
 - 지상4층 단독주택 삭제
- 건축 착공신고 ‘22. 2. 8
- 개발행위허가 변경(사업기간) ‘22. 11. 28
- 2025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23. 2. 2
-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용도변경) ‘23. 9. 7
 - 소매점 1,469.52㎡ → 소매점 672.7㎡, 일반음식점 796.82㎡
 - 농수산물직판장 4,675.17㎡, 창고시설 3,242.35㎡
- 개발행위 변경허가(지번 및 지적변경) ‘24. 5. 17
- 개발행위준공검사의제 협의 회신(도시계획과) ‘24. 7. 2
- 사용승인(여수시→김**) ‘24. 7. 8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위반건축물 기재) ‘24. 10. 28
- 행정심판 청구 ‘24. 11. 22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
 - 위반건축물 해제 ‘24. 12. 9
 - 행정심판 재결 ‘25. 3. 28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 인용
 - 고충민원접수(배**→옴부즈만실) ‘25. 4. 30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6조, 제76조, 제133조
 - ※ 약칭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71조, [별표 4], [별표 17]
- 건축법 제19조, 제7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별표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행정심판(제2024-261호,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

나. 판단 내용

- 「국토계획법」 제31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56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76조는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라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제19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함.
-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라고 하고,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으로 한정하였으며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을 포함하고 있음

4 결론

- ○○△△△식자재마트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전 착공하고, 그 후 용도를 변경한 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시설군에 속하여 신고 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발행위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청구민원은 이유가 없어 기각함

소방도로 개설관련 장기공실에 대한 보상 신청

1 민원개요

- 여수시에서 2023년 3월에 세입자를 영업보상 및 이전비 명목으로 1,600만 원씩 주고 내보내 버려서, 월세로 생활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타격이 큼.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공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실 3개)
- 이 건물에 대한 수용도장도 안 찍은 상황인데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 버린 것은 행정 잘못이라 생각함.

2 사실관계

가. 현황

- 소방도로 개설사업 내역
 - 사업명 : ○○동 △△교회~◇◇카페 소방도로 개설사업
 - 위치 : ○○동 **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2026년
 - 사업량 : 도로개설 L= 82.3m, B= 8m
 - 총사업비 : 2,585백만원(설계 33, 공사 570, 보상 1,982)
- 신청인의 부동산 내역 및 보상대상
 - 부동산 : ○○동 **4(대 57㎡), **4-1(대 12㎡), 건물(73.08㎡)
 - 보상대상 : 토지(○○동 **4-1, 대지 12㎡), 물건(점포 1층 외 11건), 기타(주거이전비 등)

나. 사실관계

-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 2017. 3.
- 「○○동 △△교회~◇◇카페소방도로 개설(4공구) 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4공구) : 2020. 3. 5.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2. 11. 22.
- 편입토지 보상 : 2023. 2. ~
- 감정평가 완료(1차) : 2023. 2. 6.
- 직소민원(1CA-2303-0252406) 접수 및 답변 : 2023. 3. 14.
- 보상계획 열람공고(4공구) : 2024. 2. 1.
- 재감정평가 완료(2차) : 2024. 6. 18.
- 편입토지 보상 : 2024. 6. ~
- 도로과 방문민원(공실 보상 요청) : 2025. 6. 30.
- 직소민원(1CA-2507-0020930) 접수 및 답변 : 2025. 7. 4.
- 직소민원(1AA-2507-0583940) 접수 및 답변 : 2025. 7. 23.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수신 : 2025. 9. 9.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움
- 2026년 본예산 반영요청(12억 원) : 2025. 9. 9.
- 여수시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 2025. 10. 28.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 보상법)」 제64조,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판례(서울고등법원2002. 11. 06. 선고2002누2675)
- 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국토부2017. 06. 08. 토지정책과-3732)

나. 판단 내용

-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하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고등법원 판례(2002. 11. 06. 선고 2002누2675)에서 ‘부동산 임대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果實)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고 판시함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3732)는 ‘도로 건설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소득(과실)을 얻는 것은 영업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
- 2022. 11. 9. 실태조사 당시 상가 4개소 중 2층 1개소와 1층 1개소는 공실상태였고, 남은 1층 2개소의 상가 세입자는 협의 계약 체결후 각각 2023. 3. 21.과 3. 22. 해당 보상비를 수령 하였으며, 세입자 1명은 보상비 수령 후, 남은 1명은 2025. 6. 24. 이전한 사실이 있음
- 여수시에서는 2차(2023년, 2024년)에 걸친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자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 불만족 민원 및 보상협의 거절, 선착순 보상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보상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2025년도에는 본예산(15억원) 및 1회 추가 경정예산(5억원)으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4 결론

- 서울고등법원 판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果實)’ 로 보고, 일관성 있게 공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에서 2026년도 본예산으로 12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25. 12. 22),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각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가선택자 조건변경에 대한 재검토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심사
에서 임의로 주택공급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분양권 소유” 를 이유로
무주택자 요건 충족 불가로 안내받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2 사실관계

가. 사업개요

- ‘24/‘25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사업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5년 신혼부부·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사업량	510가구 내외(신규 140 포함)	500가구 내외(신규 150 포함)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15만원(최장 6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 ‘22 월 최대 15만원 ○ ‘23 ~ ‘24 월 최대 15만원 ○ ‘25 신규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 ○ 부부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 전세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상 여수주소 ○ 여수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전세계약서상 기간 ‘24. 1. 1 ~ ‘25. 10. 30 사이 ○ 가구원 모두 전국 무주택 (분양권 포함)

<p>지원 자격 (기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중 1명이라도 타지역 전출 ○ 전세계약해지,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완료 ○ 혼인관계 종료 ○ 그 밖의 해제 사유 등 ※ 상기 사유 해당시 지원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중 1인 여수시외 타지역 이주 ○ 전세계약해지, 주택(분양권)구입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완료 ○ 혼인관계 종료 ○ 지원기간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대출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 ※ 상기 사유 해당시 지원중단
<p>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신규만 해당)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0종 ※ 주택소유확인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u>추가</u>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u>추가</u> ○ <u>주택소유확인서</u> - <u>추가</u> ○ 소득증빙서류(신규만 해당)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3종

나. 사실관계

- ‘24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24. 10. 28
- ‘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25. 11. 4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25. 11. 20
 - 여수시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자 기준 해석 변경’ 에 대한 재검토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청
-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 ‘25. 11. 2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무주택 기준 적용
 - 분양권 보유자는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후속민원) ‘25. 12. 2
 - 여수시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자 기준 해석변경’ 에 대한 재검토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청
-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서원준→옴부즈만실) ‘25. 12. 3.
- 민원처리 결과안내 ‘25. 12. 10.

- 2025년도 사업은 2024. 12. 18.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무주택 판단기준을 준용함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 ‘24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 ‘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나. 판단 내용

- 2018. 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그 보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20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지원자격, 지급기간, 지급기준 등을 확대·보완해 왔으며,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여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확인됨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하면서 여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여수시에서는 2024년 사업시행 당시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하면서 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소유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당시 공고문의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2025년도 사업 시행 공고문에는 2020 ~ 2024년 선정자에게 주택 소유확인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분양권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신청인의 경우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2025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4 결론

- 따라서 2024년도 사업 당시 분양권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분양권 소유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25년도 사업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주택소유확인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2024년도 사업 시행에서 발생한 ‘분양권 소유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하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함.

○○ △△캠핑장 위탁사용료 반환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관광과)에서는 2019. 5. 1. 민원인에게 ○○ △△캠핑장을 위탁하였고, 수탁자인 민원인은 해당부지 5천 평(16,621㎡)에 대한 사용료로 1년 차 비용 80,250천 원을 납입함
-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여수시는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500평으로 줄었으며, 잘못 부과된 1,500평에 대한 사용료 24,060천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함

2 사실관계

가. 시설개요

- 토 지
 - 위 치 : 여수시 ○○읍 △△리 **17-15
 - 면 적 : 16,621㎡
 - 용 도 : 가족여가캠핑장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560㎡(숙소,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등)
 - 캠핑시설 : 38면(캠핑카 등)
 - 부대시설 : 공동취사장,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나. 사실관계

- 여수시 ○○△△캠핑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19. 4. 8
 - 예정가격 : 58,703,610원(1년 사용료)
 - 위탁기간 : 5년('19. 5. 1. ~ '24. 4. 30)
 - 참가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 참가자격 :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여수시인 법인, 단체, 개인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유의사항 : 입찰전 현장확인·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시

□ 여수시 ○○ △△캠핑장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 4. 22) 및 변경('20. 9. 28)

<여수시 ↔ □□△△펜션 대표김◇◇>

구 분	당 초	변 경
협약변경	2019. 4. 22	2020. 9. 28
소재지	○○읍 △△리 **17-15	○○읍 △△리 **17-15 일원
부지면적	16,621㎡	11,800㎡(4,812㎡ 감소)
숙박시설	560㎡	560㎡
캠핑시설	38면(캐라반 10, 캠핑카형 6, 캠핑시설 22)	39면(캐라반 15, 캠핑카형 2, 캠핑시설 22)

※ ○○△△펜션 대표의 ○○ △△캠핑장 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거절

※ 변경협약 부칙

- 제1조 : 부지면적 변경은 재조정후 결정된 면적으로 한다.

- 제2조 :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안내 '19. 4. 22

- 부과기간 : '19. 5. 1 ~ '20. 4. 30(1년/1차년도)

- 위탁재산 : 토지(16,621㎡), 건물(560㎡), 부대시설 등

- 사용료 : 8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캠핑장 사용료 부과 '20. 5. 26

- 부과기간 : '20. 5. 1~'21. 4. 30(1년/2차년도)

- 부과금액 : 90,975,260(부가가치세 별도)

□ ○○△△캠핑장 사용료 감면 반환 및 재부과 안내 '20. 9. 29

- 반 환 : 1차년도(휴업(100%), 코로나 19(50%))

· 80,250,000 → 64,389,770(반환액 : 15,860,230/부가세 별도)

- 재 부 과 : 2차년도(점유면적 재산정, 코로나 19(50%))

· 90,975,260 → 55,060,910(부가세 별도)

※ 납부 전 감면·재부과로 반환내역 없음

□ 캠핑장 면적 임대요금 수정 요구 '21. 6. 3

- 면적조정후 1,500명에 대한 24,075천원 반환요청

□ 캠핑장 면적 임대요금 수정 요구에 대한 답변 '21. 6. 8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사용료 수정 곤란(변경협약서 부칙 제2조)

- 고충민원접수(김**→옴부즈만실) 및 취하 '25. 10. 22
- 고충민원접수(김**→옴부즈만실) '25. 12. 2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 2, 5항
- 굴전여가캠핑장 운영(변경) 위·수탁협약서

나. 판단 내용

- 12. 4. 13. 여수시는 ☆☆○○방송(주) 대표 송◇◇과 ‘여수시 ○○ △△캠핑장 (토지 16,773㎡, 숙박시설 560㎡, 캠핑시설 56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방송(주)는 ‘12. 5. 1부터 ~ ‘19. 4. 30까지 8년 (재협약기간 5년 포함) 동안 운영한 사실이 있음.
- ‘19. 4. 8. 여수시공고 제2019-963호에 의하면 ‘여수시○○ △△캠핑장 (토지 16,773㎡, 숙박시설 560㎡, 캠핑시설 38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위탁기간으로 위탁 운영자모집 제한경쟁 입찰을 공고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관련 업종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여수시로 되어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공고문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나항은 입찰자는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대상재산여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있음.
- ‘19. 4. 22. “여수시 ○○ △△캠핑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에 의하면 □□△△펜션 대표 김지훈(이하 수탁자)는 여수시와 위탁대상재산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 부지 16,621㎡, 숙박시설 560㎡, 캠핑 시설 38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20. 9. 28. “여수시 ○○ △△캠핑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 [변경]” 에 의하면 여수시는 수탁자와 위탁 대상 재산 중 부지 16,621㎡는 11,800㎡로, 캠핑시설중 카라반 10, 캠핑카형 6은 카라반 15, 캠핑카형 2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20. 5. 1. ~ ‘21. 4. 30.)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를 신설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의 거절로 문서상 통보만 이루어지고, 변경 협약 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21. 6. 3. 신청인은 ○○ △△캠핑장에 대한 건의민원으로 캠핑장 임대요금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21. 6. 8. 여수시는 위·수탁운영 2년차부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11,800㎡를 사용하기로 협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 협약서 부칙 제2조에 따라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따라 여수시는 2차년도 부터 4차년도까지 조정된 면적 (11,800㎡)으로 사용료를 부과해 왔고, 수탁자도 3년 동안 조정된 면적의 사용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있으며, 협약 1차 년도에는 휴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 15,860천 원을 감면한 사실이 있음
 - ‘25. 12. 2. 신청인은 협약 1차 년도의 부과면적이 16,621㎡ 에서 11,800㎡로 조정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납부한 사용료 80,25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중 24,060천 원을 반환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사실이 있음.

4 결론

- 위와 같이 '19. 4. 8. '여수시 ○○ △△캠핑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공고문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나항에 입찰자는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대상 재산 여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점
- 수탁자가 변경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 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변경협약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협약서를 기초로 3년 동안 조정 면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온 점, 이를 근거로 캠핑장을 계속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양 당사자인 수탁자와 여수시 사이에 3년 동안 협약 이행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합의(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변경된 부지면적은 2차 년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여수시 ○○ △△캠핑장 운영 위. 수탁협약[변경]' 부칙 제2조의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각함

5 종결

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1 민원개요

- 저의 집 건물 창고, 화장실(2개), 대문(좌,우), 담, 정원 설치 요청함

2 사실관계

- 본 민원은 2013.3.27. 여수시 직소민원으로 접수된 이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민원을 제기함

3 결론

- 그동안 민원 내용이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으로 판단되어 종결 처리함

○면 ○○리 △△교회 옆 하천 정비 요청

1 민원개요

- △△교회 인근 구거에서 침출수가 교회 마당과 담벽으로 유입되어
지반 약화 및 교회건물 붕괴가 우려되며 해빙기와 장마가 오기
전에 구거 정비 요청함

2 사실관계

- 구거 정비 계획
 - 위 치 : 여수시 ○면 ○○리 산 **-4번지 일원
 - 암 파쇄 : B=0.6m, L=6m
 - 면벽 설치 : H=0.7~1.3, L=6m

3 판 단

- 여수시(건설과)에서는 ○○마을 일원 배수로 유출수가 △△교회로
유입되어 우수기 침수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면-4344(2025. 3. 19.호 ○면
○○마을 배수로 정비요청)이므로 △△교회 옆 하천 정비 요청
고충 민원을 종결 처리함

○면 ○○리 둘레길 탐방로 보수 요청

1 민원개요

- ○○ 둘레길 탐방로 데크시설이 파손되어 관광객 등 안전에 위험하니 빠른 보수 요청함

2 사실관계

- ○○ 둘레길 탐방로 보수 요청 건 해결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공원 자연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허가 협의가 어려움

3 판 단

- 이에 시설물 노후 및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 관련 법령이 변경 되거나 허용 조건이 완화되면 여수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하여 설치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 둘레길 탐방로 데크시설 보수 요청 고충 민원은 종결 처리함.

철거된 지 오래된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73번지, 본인 소유 토지에 10여 년 전에 멸실 된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요청

2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 25. 3. 19.

3 판 단

-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신청 안내 후 종결 처리함.

○○둘레길 데크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 빠른 보수 요청

1 민원개요

- ○○둘레길 탐방로 데크 시설이 파손되어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보수 요청

4 결 론

- 연도 둘레길 탐방로 보수 요청건 해결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공원 자연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허가 협의가 어려움.
- 이에 시설물 노후 및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허용 조건이 완화되면 여수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하여 설치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연도 둘레길 탐방로 데크 시설 보수 요청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함.

○○읍 ○○리 지목 변경 요청

1 민원개요

- ○○읍 ○○리 *40-17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목으로 도로이며, 현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사실대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2 사실관계

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위 치 : ○○읍 ○○리 2번지 일원(평사, 모장, 계동)
- 사업기간 : '24. 1. ~ ' 25. 12.(2년)
- 업 무 량 : 2,446필지 / 1,247천㎡
- 선정배경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역으로 토지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효용과 가치 상승을 위함

나. 신청인 토지 현황

- 위 치 : 여수시 ○○읍 ○○리 *40-17
 - 지목(공부/현황) : 전 / 도로
 - 지 적 : 892㎡
 - 소 유 : 여수시
- ※ 지적재조사 지구지정('24. 6. 20)

3 판 단

-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임
- 신청인이 지목변경 요청한 토지를 포함한 도로 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 여수시는 사업 마무리와 함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 등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변경할 예정에 있으므로 종결처리 함.

○○면 ○○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1 민원개요

- ○○면 ○○리 ☆☆안길 * 앞 삼거리 CCTV 설치(외부인들이 마을 집에 돌을 던지는 등 보안 예방)

2 사실관계

가. 주요현황

- 인구현황 : 3개마을 219가구 365명
- 여수 - ○○향로 여객선 이용현황

연도	합계	타지역민	도서민	여수시민
2024	64,542	13,752(21.3%)	44,966(69.7%)	5,824(9.0%)
2023	66,791	18,404(27.5%)	42,917(64.3%)	5,470(8.2%)
2022	32,588	11,170(34.3%)	17,844(54.8%)	3,574(10.9%)

나.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김**→옴부즈만실) '25. 5. 21

3 판 단

- 여수-○○향로 여객선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외부인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한 도서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함께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사고 건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수경찰서와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므로 종결 처리함.

도로명 주소 중복에 따른 재정비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샘길 *9~1, 도로명 주소 중복으로 재정비 요청

2 사실관계

- 고충민원 접수 / 25. 5. 27.
- 현장확인 / 25. 5. 27.
- 관련부서 협의 / 25. 6. 5.
- 관련 공부 확인
: ○○면 ○○리 산*67 ⇒ ○○면 ☆☆샘길 *9~1,

3 판 단

- 도로명 주소와 일반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므로 도로명 주소 재정비 요청 고충 민원을 종결 처리함.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동 *7-*4번지 무허가 증축건물은 15평이하의 구두허가로 가름한다고 하였는데
- 27년이 지난 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부당하다 생각 하니 시정명령 철회 요청 바랍

2 사실관계

- 건축법 위반 현황
 - 위 치 : 여수시 ○○동 67~14번지
 - 건축주 : 신**
 - 위반내용 : 무허가 증축
 - 용 도 : 단독주택
 - 구 조 : 조립식 패널
 - 규 모 : 50.21㎡(2층)
 - 위반년도 : 1998년
 -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 「건축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한될 수 있음)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 구)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1997 .7. 1. 타법개정
-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등)/1997. 10. 18. 일부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 단

- 구)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축 등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령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됨
- 여수시(건축과)에 신청인 명의의 건축물 증축과 관련된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여수시 ○○동 *7~*4번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철거 요청 민원은 1998년 당시 신고 후 증축을 하여야 했으나 신고 없이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여수시(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원상회복, 철거, 추인 등) 절차를 안내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면 ○○리 **31-1번지, ○○면 ○○리 *61-2 번지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요청

2 사실관계

가. 위반건축물 현황

위치	위반내용	용도	구조	면적(㎡)	위반년도
여수시 ○○면 ○○리 **31-1번지	무허가증축	제조업소	경량철골조	11.40	2019
	무허가증축	제조업소	철파이프조	45.00	2019
	소계	-	-	56.40	-
여수시 ○○면 ○○리 *61-2번지	무허가증축	주택(비가림)	시멘트벽돌조	7.98	1997
	무허가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31.50	1997
	무허가증축	주택(비가림)	철파이프조	42.75	2012
	무허가증축	저온저장고	조립식패널조	7.70	2012
	소계	-	-	89.93	-

나. 관계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①항~제②항, 제22조(의견 청취), 제26조(고지), 제27조(의견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다. 사실관계

- 여수시 ○○면 ○○리 **31-1번지 건축 인허가 현황
 - 건축 허가일 : 2019. 3. 28.

- 건축 착공일 : 2019. 6. 13.
- 사용승인일 : 2019. 10. 5.
- 허가민원과-57783(2019. 10. 4.)에 따른 신축(주1동 1층 제2종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 87.6㎡(변동일 : 2019. 10. 14.)
- 허가민원과-78549(2022. 11. 15.)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변동일 : 2022. 11. 15.)
- 여수시 ○○면 △△리 661-2번지 건축물 인허가 현황
 - 사용승인일 : 1997. 3. 19.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표제부(용적을 산정용 연면적 : ‘0’ -> ‘79.92㎡’)] 직권변경(변동일 : 2011. 10. 6.)
 - 허가민원가-78548(2022. 11. 15.)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변동일 : 2022. 11. 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2023. 3. 7.
- 위반건축물(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2024. 10. 29.
- 위반건축물(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5. 9. 17.

3 판 단

- 2022년 11월 15일자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철거 등)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23년과 2024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2차례 부과 통보하였으며, 2025. 9. 17.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1차례 하였음
-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 여수시(건축과)에서 건축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아울러 처분의 사전 통지, 이의신청, 구제절차 및 재산상의 압류관련 사항 등을 안내 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아파트 뒤쪽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 전정 요청

1 민원개요

- ○○△△아파트 뒤쪽 도로변 가로등이 보이게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전정 요청

4 결 론

- 여수시(산림과)에서 2025. 9. 25. 해당 장소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함.

IV. 부 록

-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읍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ombudsman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ombudsman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ombudsman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ombudsman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ombudsman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ombudsman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ombudsman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ombudsman이 주재한다.

③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ombudsman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ombudsman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ombudsman이 한다.

④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ombudsman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ombudsman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ombudsman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①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675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Tel. 061)659-3075~3078
Fax. 061)659-5863